



농촌진흥청, '2026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실시

-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농어촌 지역 4,000가구 대상 조사
-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농어촌 지역(읍면) 4,000가구 만 19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구 기관인 코뮤니타스에서 조사를 맡았다.

코뮤니타스 조사요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인쇄된 설문지를 토대로 가구주와 가구원에게 질문하거나, 가구주 등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김상범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

런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라며, “조사 대상 가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1년 차에는 종합 조사, 2~5년 차에는 부문별 조사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초생활여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환경 및 경관, 안전 부문 등 5개 부문 83문항을 조사한다.

붙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개요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63-238-2331)
		담당자	연구사	손주리 (063-238-236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조사 연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04.3.)에 따라 조사 시행 의무화(5년 주기)
 - 1차 조사(농식품부, '04)/2차(통계청, '08)/3차(농진청, '13), 4차('18), 5차('23)
 - * 3차 조사('13~'17)부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통계청), 농촌생활지표조사(농진청),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실태조사(복지부)를 통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
 - * 5년 주기 종합조사('13, '18, '23) 사이에는 부문별 심층 조사 시행

□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 개요

- 대상: 전국 도시 및 농어촌 4,000가구
 - * (표본추출틀)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규모) 농어촌(읍/면) 4,000가구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 면접조사
- 기간: 2026. 9. 1.~2026. 10. 16.(46일간)
- 내용: 5개 부문 총 83문항
 - (가구주) 주택점유형태, 월평균 생활비, 영농형태 등 가구일반 항목 20문항
 - (가구원) 만족도, 체감도, 의향 등 개인 항목 63문항
 - (부문별) 기초생활여건(20), 환경·경관(14), 안전(16), 지역사회·공동체(14), 가구정보·생활전반(19)